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법률 목적 수정 및 육아휴직 급여 최소 사용기간 축소 〉
■ 박해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690호)

2025. 11.

기 후 에 너 지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 문 위 원 한 석 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법률 목적 수정	3
2. 육아휴직 급여 최소 사용기간 축소	6

I. 제안경위

2025년 9월 4일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용보험법의 목적은 1990년대 제정 당시의 고용환경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 등의 확산, 산업구조 전환, 평생 직업능력 개발 지원 및 사회안전망 확대 요구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용보험법의 목적에 일자리 전환 및 평생 직업능력 개발 지원, 국가의 고용서비스 기능 강화 등 현재의 고용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근로자들이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연 1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 사용시, 급여지급을 위한 최소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70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법률 목적 수정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법의 목적을 목적에 일자리 전환 및 평생 직업능력 개발 지원, 국가의 고용서비스 기능 강화 등 현재의 고용 상황을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u>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 <u>일하는 모든 사람의 실업 예방과 고용 촉진, 일자리 전환과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며, 국가의 고용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실업시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u> ----- ----- ----- -----.

나. 검토의견

현행 고용보험법의 목적은 1990년대 제정 당시의 고용환경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 등의 확산, 산업구조 전환, 평생 직업능력 개발 지원 및 사회안전망 확대 요구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고용보험법의 목적에 “일하는 모든 사람”, “일자리 전환” 및 “평생 직업능력 개발 지원”, “국가의 고용서비스 기능 강화” 등의 표현을 통해 현재의 고용 상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최근 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특수형태고용종사자등 비전형 노동자가 확대되고, 직업생애 주기 전반에 걸친 역량 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고용안정·전환지원 중심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서 고용보험 제도의 의미를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음.

다만, “일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은 제도의 보편적 지향을 담고 있으나, 현행 피보험자 개념¹⁾(근로자, 자영업자, 예술인, 특고 등)보다 포괄적이어서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혼선이 있을 수 있고, 동 법률이

1)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회보험법으로서, 그 특성상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보험 가입자는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바, 현행법에서는 “근로자 등”으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법률의 목적 규정은 본문의 기본이념을 제시해야 하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고용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재의 고용보험법 목적 조항으로도 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고용보험의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사회보험의 특성상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보험 가입자는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으로, 목적 조문 개정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2. 육아휴직 급여 최소 사용기간 축소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위한 육아휴직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려는 것으로,

함께 제출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36호)²⁾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음(안 제70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30일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7일---

2) 육아휴직을 연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 사용 가능

지급한다.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개정안과 함께 제출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77호)에서는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까지 사용 가능한 단기 육아휴직을 신설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1주 단위 육아휴직 사용시에도 급여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사용시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현행 30일에서 7일로 축소하려는 것임.

함께 제출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단기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1년)에서 차감되게 되는바³⁾,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여 단기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도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단기육아휴직에 대한 급여가 지급될 경우 고용보험기금의 추가재정소요는 2026

3)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77호)

제19조(육아휴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최장 2주로 하며, 1주 단위로 연 1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한다.

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3,625억원(연평균 725억원)으로 예측
됨.⁴⁾

< 추가재정소요(추정치): 2026~2030년 >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육아휴직 급여 (안 제70조)	672	698	724	751	780	3,625	725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실제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제도적 변화 등으로 인해 본 추계에서
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II-1)」, 2024 및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고용노동부는 최대 2주의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및
활성화 여건 조성을 위해 급여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의 축소 필
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39

4) 육아휴직 12개월 미만 사용 인원이 단기육아휴직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측